

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김재진 의원)

☐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.

☐ 미래한강본부 소관 사안으로

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43호,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
☐ 동 개정조례안은 한강 내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에 대해 서울시 타 조례와 유사하게 이용료 감면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14조 제2항 각 호 및 제4항을 신설 및 변경하는 것과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의 해결과 이용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21조의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.

다만, 조례 제14조 제2항 제4호 “시장이 주관하거나 한강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” 및 제5호 “시민을 위해 공연, 행사 등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”은 한강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 표현 및 공공성을 강조하는 조항으로 그 취지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.

☐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